

대학원 연구등록에 관한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대학원학칙시행세칙」 제11조의 등록에 관한 사항 중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각 대학원 석·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
제3조(등록대상) ① 대학원 석·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

②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본교 실험실, 도서관 등 제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

제4조(등록기간 및 절차) ① 연구등록 기간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한 이내로 하며,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등록하여 논문지도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 확인 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구등록금) ① 연구등록금은 신청 학기의 등록금의 10%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원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과정 4년, 박사학위과정 6년, 통합과정 7년,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5년 경과 후 연구등록 신청 시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수료 후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대체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학점당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연구등록금 납부시에는 이를 면제한다.

제6조(지원내용) 각 대학원 석사·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연구를 위한 시설(도서관 및 실험실습실 등)을 이용할 수 있으며, 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시험)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7조(자격상실) 연구등록을 한 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각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등록금 환불) 연구등록금은 납부 후 개강일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변경된 이 지침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